

##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개혁과 WTO 가입\*

최병철  
경제학과

### <요 약>

중국경제는 일보 진전된 시장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등소평의 남방시찰이 있었던 1992년초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에 두고 전면적인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GATT가입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대외무역관리기구의 조정, 경영관리의 다원화, 수출청부제 실시, 외화유보제도의 변경, 국유제공기업의 개혁 등의 무역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6년 이후 GATT에의 재가입을 추진하여 GATT가입 협상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HS제도의 도입, 수입조절세 폐지, 수입허가제도의 완화, 대외무역법의 제정, 단일관리변동환율제 채택, 수입쿼타제 폐지 등의 구체적인 시장개방 및 무역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4년 12월말까지 19번의 중국 GATT가입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WTO 발효이전에 중국의 GATT 가입협상은 종결되지 못하여 중국은 자동적으로 WTO의 원체약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될 협상을 통하여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이어 보험, 부가가치 통관, 농산물 등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 중국시장을 더 개방시킨 다음,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WTO 창립회원국이 되는 것을 공식 지지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WTO 가입은 1995년 중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 China : Foreign Trade System Reform and Accession to the WTO

Choi, Byung-Cheol  
Dept. of Economics

### <Abstract>

---

\* 본 논문은 1995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China's economic performance has been remarkable since the initiation of the reform process. Recently, a new phase of economic reforms has begun in China, aimed at establishing a 'socialist market economy' as a national goal.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reaccession to the GATT, the authorities establish a liberalized trade regime enacting Foreign Trade Law. Therefore, all rules and regulations on trade are published, tariffs on about 3,000 commodities were reduced, lowering the average tariff rate from 40% to about 36%. Import licensing requirements were removed and mandatory trade planning eliminated. Integrated foreign exchange market is established by unifying exchange rates, abolishing retention system and the foreign exchange plan.

In spite of those reforms, China failed to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WTO. Therefore, the United States will demand more market access from China, such as banking, insurance, civil aviation, agriculture, in addi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he U.S.-China bilateral discussions. Afte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China to be a member of the WTO as LDC status. So, it is likely that China will be re-admitted into the world trading club by the end of 1995.

## I. 서 론

중국경제는 일보 진전된 시장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덩소평의 남방시찰이 있었던 1992년초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에 두고 전면적인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4沿開放'<sup>1)</sup>으로 불리워지는 전방위 지역 개방과 무역업, 금융, 백화점 등 3차산업의 개방, 그리고 GATT가입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무역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역체제의 개혁에 따라 1978-1993년간 수출입총액은 연평균 16%씩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은 16.1%, 수입은 16.2%씩 증가하였다. 한편 1994년 중국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20.9% 증가한 2,3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초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수출입총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의 38%에서 45%로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통합현상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은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및 체제에 대해 계속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89년 냉전체제가 정식으로 해체된 뒤 사회주의국가 즉 중앙계획경제국의 GATT/WTO 가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81개국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WTO가 1995년 1월1일 출범하였다. 중국은 1986년 7월10일 공식적으로 원 GATT 체약국으로의 지위회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87년 2월에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비망록을 GATT에 제출함으로써 GATT 이사국은 1987년 3월 중국의 GATT가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의 GATT가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말

1) 沿海,沿邊,沿江,沿線의 이른바 '4沿 開放戰略'은 전방위개방을 통해 지금까지 연안항구도시에 집중된 외국인투자율 내륙 및 변경지역까지 끌어들이어 외자 및 기술의 효과를 내부까지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금까지 지역개발에 있어 소외된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까지 19번의 중국 GATT가입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WTO 발효이전에 중국의 GATT 가입협상은 종결되지 못하여 중국은 자동적으로 WTO의 원체약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GATT 가입협상이 아닌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새로 벌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GATT/WTO 가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외무역체제의 개혁 내용을 제II장에서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중국의 GATT/WTO 가입 협상 경위와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은 GATT/WTO 가입 협상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HS제도의 도입, 수입조절세 폐지, 수입허가제도의 완화, 외환관리제도의 변경 등의 구체적인 시장개방 및 무역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행정수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되던 무역관리체계를 국제화와 GATT/WTO 가입을 위한 준비조치의 일환으로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무역정책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 IV 장에서는 그동안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어 왔던 무역관리제도의 개선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중국의 WTO가입 전망과 WTO가입에 따른 영향을 다루기로 한다.

## II.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개혁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장기간 중국을 지배해 오던 소비에트식 경제체제의 청산과 개혁, 개방 선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1979년에는 농업부문개혁에 착수하여 각 농가별로 책임을 지고 경작하여 책임생산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농업생산이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기업부문에 대해서는 자율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시험적인 개혁조치가 시도되었다.

그후 덩소평의 남방시찰이 있었던 1992년초 이래로 중국경제는 개혁, 개방 가속화를 지속하고 있다.<sup>2)</sup> 1992년말의 중국공산당 14기 대회는 강택민 총서기의 정치공작보고를 승인하는 결의를 통해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에 둔다는 것을 선언했고,<sup>3)</sup> 1993년 3월에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수정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sup>4)</sup> 이에 따라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의 경영체제를

2) 덩소평은 1992년 1월 하순-2월 초순 남부지역을 시찰하면서, "개혁, 개방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소위 '南巡講話'를 발표하였다. 남순강화는 2월에 '당 중앙 2호 문건'로 공식화 되었고, 3월에 열린 당 정치국 전체회의를 거쳐 '당 중앙 4호 문건'로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경영체제를 시장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관련 권한을 지방과 하급기관에 대폭 이양하며, 연해-공업 중심의 개발·개방 전략에서 벗어나 내륙-3차산업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획기적인 개혁, 개방 방침이 제시되었다. 양평섭,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 중국동향.

3)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1993.11.11-14)에서 90년대 경제체제개혁의 행동강령이 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0장 5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결정」은 시장경제의 기반이 될 금융제도 및 조세·재정제도의 개혁방안과 국유기업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경제체제개혁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과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념을 "사회주의 기본제도와 결합된 것으로서 국가의 전체적 조절하에 자원배분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정의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公有制를 근간으로 하면서 각종 경제형태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는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박월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2. 중국동향.

4) 덩소평 집권 이후 중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헌법 제정과 수정이 있었다. 1982년 12월4일 제5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제정·반포된 헌법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4개 부문의 현대화계획 추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명시하였다. 헌법은 1988년 제7기 전인대에서 일부 수정되어 사유경제와 토지소유

시장대응형으로 전환함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시장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4沿開放'로 불리워지는 전방위 지역개방과 무역업, 금융, 백화점 등 3차산업의 개방, 그리고 GATT가입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무역체제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sup>5)</sup>

## 1. 대외무역체제 개혁

### (1) 대외무역관리기구의 조정

중국의 무역기구는 1978년까지는 중앙의 대외무역부, 각급 지방정부의 대외무역국, 대외무역부 소속의 중앙무역총공사 및 지방의 분공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부부서가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직접 수출입을 담당하였다. 1979년 이후 개혁, 개방 추진과 함께 무역체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중국정부는 1979년 7월 30일 제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외국투자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진출구관리위원회의 설립을 결정, 수출입관리위원회를 대외경제무역업무전담기구로 삼아 대외경제 협력 및 기타 중국에 제공되는 원조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그러나 1982년 3월 중앙정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수출입관리위원회와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및 국가외자관리위원회를 '대외경제무역부'로 흡수통합하여 당 중앙과 국무원이 결정한 대외무역의 방침 및 정책 업무를 주관토록 하였다.<sup>6)</sup>

그후 1984년부터는 기존의 무역기구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었다. 그 결과 대외무역부(1993년 4월 조직개편에 의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개편)와 지방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국)는 무역업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만 하게 되었으며, 중앙무역총공사와 지방의 분공사, 국무원 각 공업부 산하 수출입공사 및 지방정부에 소속된 무역총공사(수출입공사)는 행정기관에서 독립되어 명실공히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권의 매매를 명시화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 29일 8기 전인대에서 시장경제도입의 본격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부분중 헌법 제15조의 "국가는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 아래 계획경제를 실행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계획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국가는 시장경제를 실시한다"로 변경되었다. 노호진,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4. 중국동향.

- 5) 중국에서 대외개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은 廣東省과 福建省이었다. 1980년 8월에 廣東省의 심천,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1984년부터 개방지역이 광둥성과 복건성에서 연해지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84년 4월에는 14개 연해항만도시가 개방되었는데, 특히 이들 연해개방도시에는 외자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업도시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대외개방지역의 확대과정은 계속되어 1990년에는 上海의 浦東지역을 종합적인 공업·상업·무역·금융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1992년에는 국무원이 滿洲里, 綏芬河, 黑河, 珙璜 등을 변경무역개발구로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낙후지역과 연해지역을 연계하여 7대 공동경제발전지구로 개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개방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7대 지구는 上海의 浦東을 중심으로 하는 長江연안지구, 珠江三角洲지구, 북경·천진·하북·산둥·요녕으로 이어지는 環渤海지구, 서남 및 화남지구, 서북지구, 중원지구, 동북지구 등이다. 이처럼 중국은 중진 연안지역 위주의 개방에서 이제는 전 내륙지역이나 변경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양평섭, 「북방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5. pp.74-75.
- 6) 중국의 대외무역 관리부서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급 관리부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요 임무는 대외무역, 대외경제원조, 외자 및 기술의 도입, 해외도급사업 참여, 국제노동 등 국제경제활동에 관련된 당중앙과 국무원의 방침과 정책을 집행하고, 이에 관련된 법규와 계획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그리고 성급 대외무역회사의 설립에 대한 심사 및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회사 경영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993년 3월 제8기 인민대표회의 제1차 회의 결정에서 중진의 대외경제무역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던 수출입상품검사기능을 흡수하여 확대 개편되었다. 제2급 관리부서는 각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일시)의 경제무역청들로 성 차원에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제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무역합작부가 부여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34-35.

## (2) 경영관리의 다원화

1979년 중국정부는 대외무역경영권을 개방하고 통상항 지구를 설립하여, 이 지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 지방이 보유한 외환과 수출소득에서 유보된 외환을 사용하여 직접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80년에는 국무원 관련 부와 위원회가 비준을 거쳐 설립한 대외무역공사와 대외송포공정공사(대외위탁공사)가 직접 수출입업무와 대외위탁가공업무, 노무협력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외무역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 경영권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공사는 일부 수출입상품에 대해 구매제에서 대리제로 개혁하여, 생산기업이 대외무역상담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직접 대외무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장위주의 대대적인 조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상품의 대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무역공사는 주요 교역대상국에 지점을 개설하여 현지 시장 조사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84년 9월15일 국무원이 「대외무역체제개혁 의견 보고(외무체제개혁의견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이를 성실히 집행하도록 통지하였다. 통지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 1)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통한 대외무역의 행정관리 강화.
- 2) 정부의 무역관리권 이양으로 무역기업경영의 적극성을 유도.
- 3) 수출입대리제와 전면적 수입경영대리제의 실시로 무역회사의 대외무역경영관리의 개선.
- 4) 대외무역 계획체제의 개혁으로 계획내용의 간소화.
- 5) 대외무역 재무체제의 개혁으로 경제조정 수단의 강화.

즉 국무원은 1) 政企分離 및 經貿部의 전담관리 2) 外貿經營의 대리제 실시 3) 工貿結合, 技貿結合, 進出(수출입)結合 등의 '三項原則'을 제정하였다. 한편 당 11기 3중전회(1993) 이후, 대외무역체제의 개혁과정에서 대외무역이 활성화되어 수출입업무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전업공사에서 각 지역·부문 소속의 수출입공사로 이양되었고, 대외무역기업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무역방식도 다양해졌다.

## (3) 수출청부제 실시

국무원은 1987년에 대외무역부문에 경영청부제의 시험도입을 결정하여 대외무역공사에 경영청부제를 실시하였으며, 1988년부터 중국정부는 주로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대외무역 경영 청부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왔다.<sup>8)</sup> 이와같은 전면적인 경영청부제의 실시로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외무, 공무진출구공사는 중앙의 청부단위가 되어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외화의 중앙상납, 재무손익의 자기부담과 같은 3가지 항목의 청부제가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독점적 무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업무만을 지방과 기업에 이양하는 중국 특유의 무역제도이다.

그러나 대외무역기업의 급속한 증가로 대외무역진서가 혼란되어 대내적으로는 구매경쟁 현상이 초래되어 수출상품의 구매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출가가 하락하는 한편, 내구소비재의 대량수출과 맹목적인 수입현상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1991년부터 청부제 실시가 강화되어 종전까지는 수출획득외화의 상납과 기업효율이 청부의 지표였지만, 1991년부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인민정부와 외무.

7)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16-17.

8) 무역업무의 청부경영책임제는 1987년에 실험적으로 경공업, 공예품 및 복장을 취급하는 중앙의 대외무역 전업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3개의 무역관련 지표(수출액 지표, 외화표시 수출원가 지표 및 손익지표)를 매 3년마다 작성하게 하고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공무전업수출입공사 및 기타 외무기업이 국가에 대해 수출총액 및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 외화의 중앙상납 등에 대한 지표를 청부토록 하였다.

#### (4) 외화유보제도의 변경

1979년에 제정된 외화유보제도에 의하면, 모든 기업과 개인이 획득한 외화는 공정한환율로 중국은행에 매각되며, 그 외화는 중앙정부의 외화유보로 편입되고 외화가득자(지방정부, 정부부문, 기업)에 의해 획득한 외화중 일정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기업들의 외화유보율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경제특구의 경우 보유율이 100%인데 반해, 광동성은 70%,상해는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이한 유보율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유보율이 높은 지역의 기업은 유보율이 낮은 지역에서 수출용상품을 고가로 매점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빚어졌고, 이것이 무역질서를 혼란시키는 원인으로 되었다. 이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1년초에 외화유보제도를 변경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온 유보비율을 폐지하고, 상품별유보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불평등한 경쟁을 일소하고 안정된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기업에만 적용되고 資企業의 유보율은 종전대로 100%로 유지하였다. 유보제도의 변경으로 대외무역기업과 수출품생산기업들이 보다 많은 외화를 유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동 내지 대외무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월1일부터 도입된 단일변동환율제하에서는 중국기업의 외화유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화를 시장가격에 따라 지정은행에 집중시키게 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중 일정비율을 중앙에 상납·유보하던 상납제와 유보제가 철폐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의 상당부분을 공정한환율로 국가에 상납해온 국영무역공사 및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민폐 수입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수출이 촉진될 것이다.<sup>9)</sup>

#### (5) 국유제공기업의 개혁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자율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이윤유보제, 이윤계약제, 계약경영 책임제 및 주식회사제의 도입이라는 단계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2년에 「국유제공기업의 경영메카니즘 전환조례(전민소유제공기업전환경영기체조례)」에 따라 「대외경제무역기업 경영메카니즘 전환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비효율적 경제관행의 타파는 물론 세계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대외경제무역기업 경영메카니즘 전환 실시세칙」의 주요 내용으로는,<sup>10)</sup>

- 1) 기업중 국유자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고, 기업은 국가를 포함한 출자자가 투자하여 형성된 전체의 법인재산권을 보유하며,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실체가 되고,
- 2) 기업은 전체의 법인재산으로서 자주적 경영에 따라 손익을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납세하며, 출자자에 대하여 자산가치의 보존과 증식을 책임진다.
- 3) 기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경영을 계획하며, 정부는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는다.
- 4) 과학적인 기업지도체제와 조직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소유자-경영자-노동자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유인과 규제를 상호결합한 경영메카니즘을 형성한다.

한편, 국무원이 1992년 3월에 승인한 「1992년 경제체제개혁의 요점」에서도 자율적 경영,

9) 박월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 중국동향.

10) 「중소연구」,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1993/4 겨울, 통권 60호, pp. 233-236.

손익의 자기책임, 자기발전, 자기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영기업의 경영체제 전환을 개혁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 인사 자율권, 수출입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 경영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종래의 이윤청부 방식에서 국유자산 관리청부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제의 도입을 적극 확대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적자에 빠져 있는 기업을 폐업, 전업, 합병하는 한편 국영기업간 수평적 결합을 통한 기업집단화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sup>11)</sup> 그러나 제반 관련제도 및 주변 환경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통합현상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은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및 체제에 대해 계속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6년 이후 GATT에의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GATT 가입에 따른 대외무역관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 2. 대외무역 현황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외경제관계가 강화됨으로써 무역액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무역체제의 개혁에 따라 1978-1993년간 수출입총액은 연평균 16%씩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은 16.1%, 수입은 16.2%씩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개방초기 약간의 적자를 보이다가 1981-83년에는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 후 1984년부터는 공업부문의 개혁과 무역체제의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1989년까지 수입초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입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수출증가율은 꾸준히 높아져 1990년부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어 최근 3년간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경제과열에 따른 왕성한 국내수요와 資企業에 따른 설비도입 급증 및 중국시장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121.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1994년 중국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20.9% 증가한 2,3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초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수출입총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의 38%에서 45%로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1994년에는 경기과열 억제제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원화의 평가절하, 적극적인 수출진흥책 등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31.9% 증가한 1,210억 달러, 수입은 동 11.2% 증가한 1,15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의 122억 달러의 적자에서 53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총수출액중 1차산품(SITC 0-4)은 53.5%, 공업제품(SITC 5-9)은 4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1차산품의 수출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공업제품의 비율은 증가하여, 1992년과 93년에는 1차산품의 경우 20.1%와 18.2%, 공업제품의 경우 79.9%와 81.8%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1994년에는 공업제품의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7%로 증가하였다. 수출상품에 있어서 곡물, 육류, 수산물, 채소, 땅콩 등 1차산품의 수출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의류와 기계류 등 공업제품의 수출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계 및 전자제품의 수출이 1994년도에 33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0.9%의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그 중 첨단 및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이 280억 달러로 87.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1차산품의 비율이 1980년대에 34.8%였으나 1992년에는 16.4%, 93년에는 13.7%로 그 비율이 줄어든 반면, 공업제품의 비율은 1980년의 65.2%에서 1992년에는

11) 양평섭,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 중국동향.

83.6%, 93년에는 86.3%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4년에는 공업제품의 수입이 992.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85.8%로 낮아졌다. 한편 중국경제의 공업화에 필요한 기계류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기계와 수송장비의 수입이 1992년과 93년 전체 수입액의 39%와 43.3%를 차지하였으며, 생산재 및 설비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내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 다시 회복되면서 주요 건설자재와 설비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와 내구소비재 등 고급제품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12)</sup>

한편, 1978년 이후 대외무역관계의 계속적인 확대로 중국은 현재 180여개 국가와 경제·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수출입상품 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미 및 일본 등 선진제국이 중국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제3세계국가,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과의 무역량도 금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4년도 국별 총교역량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년대비 22.6% 증가한 478.9억 달러로 전체교역액의 20.2%를 차지하여 1위 교역상대국이며, 다음으로 홍콩, 미국 등의 순이며 한국은 6위 교역상대국이다.<sup>13)</sup>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의 확립과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90년대 산업정책 강요」를 공표하여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정책 당국은 최근 산업정책을 국가의 거시경제 관리의 강화 및 개선, 산업구조 조정의 합리화, 산업의 체질 강화 및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綱要'에 의하면 중국의 90년대 산업정책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4)</sup>

- 1) 국민경제의 기초로서 농업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농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한다.
- 2) 교통, 운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에너지 생산 등 기초공업을 육성한다.
- 3)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게 한다.
- 4) 무역구조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 5) 첨단 신기술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여 신중공업의 발전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중국은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장려 품목으로 농산물, 경공업제품 및 방직제품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기타의 전기제품,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제품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자원의 수출이나 초급제품 및 에너지 함량이 높은 제품 등의 수출은 점차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제한시킬 것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품목과 관련하여는 신기술 및 그와 관련된 핵심설비와 기술, 그리고 유치산업의 기술 및 설비도입은 장려하되, 소비성 제품의 수입은 장려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綱要'는 중국정부가 장차 자국의 수출입품목의 구조를 조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외무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는 중국 수출입은행의 역할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플랜트 설비와 기계, 전자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소수의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는 효율성, 공정성 및 공개의 원칙에 따라 할당입찰, 경매

12) 1994년에는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과 수입억제 정책으로 강제(전년대비 24.3% 감소), 석유제품(25.4% 감소), 승용차(51.3% 감소)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13) 1994년도 국별 교역실적을 보면 일본(교역액:478.9억 달러, 전년대비:22.6%, 비중:20.2%), 홍콩(418.2억 달러, 28.7%, 17.7%), 미국(354.3억 달러, 28.1%, 15.0%), EU(315.2억 달러, 20.7%, 13.3%), 대만(163.3억 달러, 13.4%, 6.9%), 한국(117.2억 달러, 42.6%, 5.0%) 순이다.

14) 「중소연구」,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통권 63호, 1994, pp.211-216.



또는 규격화된 배분을 실시한다.<sup>15)</sup> 그리고 정밀가공 및 고부가가치 제품과 플랜트 설비 수출정책을 촉진하며, 조건을 갖춘 각종 기업에게 대외무역경영권을 부여하고 대형기업의 해외직판 채널의 구축을 장려한다. 또한 국가산업정책에 따라 관세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sup>16)</sup>

### 3. 외자기업의 수출 급증

중국의 수출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중국해관 통계에 따르면 1993년도 중국의 총 수출은 918억 달러로 수출규모는 연간 8%, 68억 달러가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달성한 1993년도 수출실적은 252억 달러로 연간 45%, 79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할이 커지게 된 이유는 국유기업의 수출부진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때문이다. 1993년 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채무보고(World Debt Tables)」는 '중국은 이미 개도국 중 최대의 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991	1992	1993	1994
건수	12,978(78.4)	48,764(275.7)	83,265(70.8)	47,490(-42.9)
계약액(억 달러)	119.77(81.6)	581.24(385.3)	1,108.52(90.7)	814.6(-26.5)
실행액(억 달러)	43.66(25.2)	110.07(152.1)	257.59(134.9)	337.0(30.6)

자료 :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각월호.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92년 이후 2년이상 급신장세를 유지해온 중국내 외국인 투자는 1993년에는 1,108.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3년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어 1994년에는 투자건수(43% 감소)와 계약액 규모(27% 감소)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실행액에서는 31%가 증가하였다.<sup>17)</sup> 이로써 1994년말 누계로 외국인투자기업은 22만 1,718개사에 이르게 되었다. 국별로는 홍콩,대만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일본의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중국의 수출과 외자기업(1993) (단위:억 달러,%)

15)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중국기업들의 수출손실을 줄이고,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제품을 막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쿼터에 대한 공개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92개 수출품목을 포함시켰다.

16)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8. pp.138-144.

17) 대중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1)1993년의 지나친 투자, 2)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전환, 3)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4)외자기업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강화, 5)중국경제의 장래와 중국정부의 개혁추진 의지 및 능력, 정치, 사회적 불안 가능성, 6)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들의 해외투자대상국으로의 부상 등으로 보인다. 박원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7. 중국동향.

	수출액		전년비 증감율		비중 (B/A × 100)
	전체(A)	외자기업(B)	전체	외자기업	
총수출	917.6	252.4	8.0	45.4	27.5
북 경	27.0	3.4	29.8	52.3	12.5
친 진	24.3	6.1	1.9	109.2	24.9
상 해	75.8	17.6	3.3	67.0	23.5
산동성	46.4	8.9	2.7	18.3	19.2
광둥성	376.1	143.7	10.1	33.1	38.2
(심천특구)	64.8	38.7	-3.6	15.3	59.7

자료 : 「중국해관통계」 1994, 「중국통계연보」 각년호.

외자기업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북경, 산동성 등 북부지역은 대외개방이 다소 늦어졌던 관계로 아직도 그 비중이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광둥성처럼 대외개방이 한발 앞서 추진된 지역에서는 40%를 육박하고 있으며, 외자를 주축으로 한 개발을 추진해 온 심천경제특구에서는 그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 대한 외자기업의 기여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1985년의 2.7억 달러에서 1992년에는 174억 달러, 1993년에는 253억 달러, 1994년에는 347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1.5%에서 20.4%, 27.5%, 28.7%로 높아졌다. 반면 외자기업에 의한 부품, 원재료의 수입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역수지 개선효과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 이외에 외자계 기업은 자금, 기술, 경영관리기법의 도입 외에 수출시장 개척, 고용 및 지역경제발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층화, 전방위화 등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

1) 세계의 대형,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잠재력을 겨냥하여 대중 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다.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층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단독투자, 단순 프로젝트에서 진일보하여 연합투자, 일정구역 내 종합개발 등으로 발전하였다. 기술집약, 기초시설, 에너지 개발 등 비교적 높은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외국인 투자는 연해지구에서 촉발되어 내륙 성, 시로 확산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4연1내' 즉 연해, 연강, 연변, 연선(중국의 동서 내륙 횡단 철도 주변) 및 내륙지구로 다층화, 전방위화되어 가는 신국면을 맞고 있다.

4) 외국 투자선이 다변화 되었으며, 합작투자 형식, 투자방식 등이 다양화 되었다. 투자분야도 노동집약형 일반가공업 중심에서 기초공업 및 3차산업(1993년도 투자건수의 20% 및 금액의 30%정도)으로 이동하면서 투자방식도 컨소시엄 등 다양화되고 있다.

5) 이미 정상 조업하고 있는 5만개 이상 외자기업의 경영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와함께 중국은 외자유치 정책의 중점을 과거의 지역별 정책에서 산업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3년 11월 14기 3중전회의 결정은 외자유치의 중점을 기초설비, 기초산업, 첨단기술산업 및 노기업의 기술개조, 수출형 기업 등에 두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밝힌 중점적인 외자유치 항목은 농업 종합개발 항목 및 외향형 농업, 기초

18)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은 1993년도 4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입액의 40.2%를 차지하였다.

19) 「중소연구」,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통권 60호 1993/4, pp.244-245.

시설, 기초산업, 자본기술 집약형 및 첨단기술 항목, 대·중형 국유기업의 기술개조, 수출가공업 등이다. 또한 금융, 상업, 물자, 외국무역, 운수업 등 서비스산업은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양적확대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고,<sup>20)</sup>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측 기업의 현물 출자시 국유자산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국유자산 평가 관리제도, 외자측 기업의 현물 출자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사정하기 위한 외국기업 투자재산 감정관리 규칙, 외자기업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국의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기·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외자기업 관련제도 및 법규도 차례로 정비되고 있다.<sup>21)</sup>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시간 제한(주 44시간, 적주휴무제, 1일 4시간 초과금지), 노조설립 의무화(설립후 2년이내), 노동보험 제도 및 안전·위생기준의 제정 등 복지후생 강화 등을 규정한 노동법도 공포되었다.<sup>22)</sup>

### III. 중국의 GATT/WTO 가입

#### 1. 사회주의 국가와 GATT/WTO

1989년 냉전체제가 정식으로 해체된 뒤 사회주의국가 즉 중앙계획경제국의 GATT/WTO 가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81개국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WTO가 1995년 1월1일 출범하였다.<sup>23)</sup> 그러나 전형적인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국 체제는 그 자체로서는 GATT/WTO 가입이 불가능하며 GATT/WTO 가입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메카니즘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적 메카니즘을 일부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앙계획경제 특성이 남아있으면 GATT/WTO 가입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법이 가입조건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현재 WTO의 회원국 중 과거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국은 총 4개국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원체약국으로 GATT에 가입한 것이고, 가입협상을 거쳐 GATT에 가입한 국가는 2개국(헝가리, 루마니아)이다. 그리고 3개국은 WTO승인을 위한 국내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sup>24)</sup> 한편 소련의 와해로 1992년 초 러시아공화국이 소련의 GATT 업저버 지

20) 중국은 외자기업의 대중투자에 있어 새로운 인가기준을 담은 「외자도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선별해서 인가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였다. 즉 외자기업의 노동집약형 업종에 대한 투자는 산업기반이 낙후된 내륙지방 중심으로 투자를 허가하는 한편, 생산능력이 부족한 소재산업이나 하이테크산업 등 기술집약형 업종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리용자나 세금감면 조치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호,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1. 중국동향.

21)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사업체와 그 주재원이 자체사용 목적의 사무용품과 가정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했던 면세혜택을 95년 1월1일부터 철회하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사업체의 개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투자규모가 적고 경영기간이 짧은 사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호,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1. 중국동향.

22)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유기업, 외자기업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중국 최초의 「노동법」을 통과시키고(1994.7.5) 주석령으로 공포하여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기로 하였다. 박월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8. 중국동향. 한편 중국정부는 「노동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1995년 3월25일 발표하여 오는 5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하여 기존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다.

23) 81개 회원국 중 53개국은 개도국 혹은 최빈개도국이며, 25개국이 선진국, 그리고 3개국이 선진개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외에도 49개국이 현재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며, 그 중 9개국은 WTO를 승락하였고 38개국은 국내비준 절차 중이다. 그러나 알제리와 중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1995년 3월2일 현재 WTO 회원국은 82개국이다.

24) 쿠바, 폴란드, 슬로베니아

위를 공식적으로 승계하였고, 현재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알제리와 중국을 포함하면 WTO는 세계 모든 나라를 회원국으로 포용하는 유일한 국제무역기구가 될 것이다.

WTO의 원 회원국(Original Member)은 WTO 설립협정이 발효되는 일자(1995년 1월 1일)의 GATT 1947 체약국 및 EC로, WTO 설립협정과 MTA 및 GATT 1994에 부속된 양허 및 이행스케줄과 부속서 1B의 GATS에 부속된 국별 이행계획서를 수락한 국가로 되어 있다.<sup>25)</sup> 그리고 WTO 설립협정은 원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GATT 1947 체약국들을 위해 개방되며, 개방은 WTO 설립협정이 발효한 시점으로 부터 2년간 지속된다.<sup>26)</sup> 한편 WTO의 일반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대외무역관계 및 WTO 설립협정과 MTA 상의 여타 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된 관세영역 및 국가는 자신과 WTO 간의 합의조건에 따라 WTO에 가입할 수 있다.<sup>27)</sup> 가입결정은 각료회의에서 하며,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투표의 2/3 다수결로 가입조건에 대한 합의사항을 승인한다.<sup>28)</sup>

<표 3> 중앙계획경제국의 GATT/WTO 관련동향

국명	WTO 관련동향
소련	러시아 공화국이 소련의 GATT 업저버(1990.5) 지위 승계 WTO 가입절차 진행 중
쿠바	GATT 가입국(1948.1.1), WTO 국내비준 절차 중
폴란드	" (1967.10.18), WTO 국내비준 절차 중
체코슬로바키아	" (1948.4.20)*
유고슬라비아	" (1966.8.25)**
헝가리	" (1973.9.9), WTO 원 회원국
루마니아	" (1971.11.14), WTO 원 회원국
불가리아	WTO 가입절차 진행 중
알바니아	WTO 가입 신청(1995.1)
몽골	WTO 가입절차 진행 중
베트남	WTO 가입 신청(1995.1)

\*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면서 GATT 회원국 지위를 자동상실하였으나, 1993년 4월 15일 GATT는 총회 결의에 의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1993.1.1 소급) 그리고 각각 WTO 원 회원국이다(1995년 1월 1일).

\*\* 현재 유고슬라비아는 5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아직 구 유고슬라비아의 GATT 지위를 이어 받은 연방은 없는 상태이다. 그 중 슬로베니아가 WTO 승인을 위한 국내비준 절차 중이며, 크로아티아 공화국과 마케도니아(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는 WTO 가입절차가 진행 중이다.

## 2. 중국의 GATT/WTO 가입 협상 현황

25) WTO 설립협정 제11조 1항(Article XI : Original Membership)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which accept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for which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re annexed to GATT 1994 and for which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are annexed to GATS shall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WTO.

26) WTO 설립협정 제14조 1항에 의하면, 1995년 1월 1일 이전의 GATT 체약국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월 1일 까지 WTO 설립협정을 수락한 국가는 WTO의 원 회원국이 될 수 있다.

27) WTO 설립협정 제12조(Article XII : Accession)

28) 원회원국과 일반 회원국의 협정상 권리·의무상 차이는 없으나, 원회원국이 아닌 경우는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의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하고 가입전까지 협정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중국은 1948년 GATT 창설 당시 국민당 정권의 중화민국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으나, 1949년 공산당 정권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섬에 따라 1950년 계약 당사자였던 국민당의 현 대만정부는 GATT 하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GAT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중국은 GATT 계약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GATT 회원국들과의 정식관계는 중단되어 왔다.<sup>29)</sup>

그러나 1971년 UN이 중국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중국은 GATT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1981년 MFA 협상에 참가하여 1983년에는 MFA에 서명함으로써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와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한편 1982년에는 GATT 업저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1984년에는 GATT 계약국단의 전원합의로 중국은 GATT 이사회와 각 전문기구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등의 GATT와의 접촉이 확대되었다. 그 후 1986년 7월10일 중국은 공식적으로 원 GATT 계약국으로서의 지위회복(resumption)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sup>30)</sup> 1987년 2월에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비망록을 GATT에 제출함으로써 GATT 이사국은 1987년 3월 중국의 GATT가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작업반(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설치에 합의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의 GATT가입 논의가 시작되었다.<sup>31)</sup>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이 작업반 회의는 약간의 중단시기를 제외하고, 1994년 12월말까지 19번의 중국 GATT가입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작업반 회의는 주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및 중국의 GATT 가입 의정서 및 관세인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1994년 6월28일 제17차 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으로서의 가입조건을 요구하며 GATT가입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즉, 수입쿼터제 등 비관세장벽의 90%를 2000년까지 철폐하고, 현재 평균관세율 42%의 공업제품의 90%에 대해 관세최고율을 40%로 인하하고 5년후 35%까지 인하하는 내용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중국은 8월말에 광공업,농산물,서비스무역 등 3분야의 시장개방계획 제출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7월28일 제18차 작업반회의에서 각국은 중국의 외환제도,가격통제,비관세장벽 등 10개 분야에 대한 의정서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중국의 개도국지위를 둘러싼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1995년에 GATT를 승계하여 출범하는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기 위해 1994년 중으로 GATT 가입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은 2중환율구조 하에서는 GATT의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1994년 1월 단일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으며, 3월에는 1997년까지 수입쿼터제를 폐지하겠다고 공표하는 등의 GATT 재가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여왔다. 그러나 WTO 발효이전에 중국의 GATT 가입협상은 종결되지 못하여 중국은 자동적으로 WTO의 원계약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GATT 가입협상이 아닌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새로 벌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29) 대만은 1965년부터 업저버 자격으로 GATT에 참여하여 왔으나, 1971년 UN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적 대표 정부로 인정함에 따라 GATT 회원국은 대만의 GATT 업저버 자격을 박탈하였다.

30) 중국은 1986년 7월10일 GATT 가입 신청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1. 모든 가맹국으로부터 무조건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을 것.
2.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GATT가 기타 개도국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중국에도 부여할 것.
3. GATT의 특정 가입국에 의한 대중차별 무역행위를 정지할 것.
4. 중국은 신규가입이 아니라 창설국가의 일원으로 GATT에의 복귀가 인정되어야 할 것.
5. 구체적인 수입의무 부과가 아닌 관세양허 방식이어야 할 것.

31) 작업반의 주요 기능으로는 1) 중국의 무역제도 심의, 2) 가입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관한 협정서 초안 작성, 3) 관세양허표 작성을 위한 협의장소 제공, 4) 중국과 GATT에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한 토의 등이다.

GATT 1947 원 체약국으로 지위가 복귀되었을 경우에는 WTO 설립협정 제14조 1항에 의거 1997년 1월 1일까지 WTO를 수락하면 WTO 원 회원국이 될 수 있다.

<표 4> 중국 GATT 가입협상 경위

일정	주요내용
1948.5.7	중국(국민당정부), 23개 원가맹국으로 GATT에 가입
1950.5.5	대만, 자의에 의해 GATT 탈퇴
1965.3.16	대만, 업저버자격을 신청·허가
1971.10.25	중국의 UN가입 및 대만 축출
1971.11.19	UN의 결정에 따라 GATT 회원국은 대만의 업저버자격 박탈
1983.12.15	중국,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서명, MFA 의무준수를 수락
1984.4	중국, GATT 특별업저버자격 부여 (GATT 회의와 기타 GATT 기구에서의 참석 허용)
1986.7.19	중국, GATT 사무국장에게 GATT 회원국 지위회복에 대한 결정통보
1986.9.15	중국,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GATT 장관회의에 참석
1987.2.13	중국, GATT에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각서 제출
1987.3.4	중국의 GATT 가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작업반(Working Party)설치
1987.10-89.4	1차-7차에 걸친 작업반 회의 개최
1989.6.4	천안문사태 발발로 작업반 회의 중지
1990.1	대만, GATT 가입신청서 제출
1994.4.15	WTO 창설을 위한 마라케시 각료회의 참석 (UR 최종의정서 및 WTO 설립협정문제에 서명)
1989.12-94.12	8차-19에 걸친 작업반 회의 개최

자료 :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Lardy(1994), 「China in the World Economy」, pp.141-143.

### 3. GATT/WTO 가입 협상관련 쟁점사항

#### (1) 원체약국의 지위회복 문제

중국은 자신의 GATT 합류가 신규가입(accession)이 아니라 체약국 지위의 복귀(resumption)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1950년 대만의 임의적인 GATT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sup>32)</sup> 중국이 GATT 원체약국 지위 복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대만의 지위와 관련한 정치적 성격과, 원체약국의 권리와 관련한 경제적 실익(조부조항 등)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중국만이 유일한 합법적 대표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에 속한 하나의 지역에 불과하다는 중국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sup>33)</sup> 한편 중국은

32) 중국정부는 법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GATT의 원체약국이며, 단지 1949년 이후 GATT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80년 4월 ITO 잠정위원회(ICITO) 회원으로써 둔젤 GATT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 참여했다.

33) 대만이 GATT 가입을 원한다면, 중국의 일개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GATT 제26조 5(c)의 방법에 의해 가입할 수 있으며, 확인선언(sponsorship)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기체약국에게만 주어지므로 중국이 먼저 GATT에 가입한 후 대만은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ATT 제26조 5항 C : 본 협정을 수락한 체약국의 어떤 관세영역이 대외통상관계 및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완전

조부권의 확대를 위하여 조부권의 기준일자를 재가입일자(의정서 서명일)로 해줄 것을 주장하여 조부권 인정시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왔다.<sup>34)</sup> 그러나 WTO체제에서는 과거 GATT 출범시 용인되었던 조부조항인 'GATT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GATT)'가 GATT 1947이 GATT 1994로 흡수되면서 제외되고,<sup>35)</sup> WTO협정 제16조 4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규를 WTO협정에 합치(conformity)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sup>36)</sup> 그리고 합치의무조항이 WTO협정의 본문 규정이므로, 비록 GATT 1994나 다자간무역협정(MTA)과 상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원체약국 지위복원을 주장하는 의도는 GATT 제35조상의 부적용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sup>37)</sup> 따라서 중국이 원체약국 지위복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체약국이 중국을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방지된다. 특히 미국은 1974통상법의 402조(Jackson-Janik법)에 의거 공산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법과,<sup>38)</sup> 중국이 GATT 회원국의 지위를 복원하는 자격으로 재가입한다면 기존의 회원국간에는 35조를 발동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따라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GATT 규정과 서로 상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건부 최혜국 부여를 계속할 수도 없게 된다. 한편 GATT 제35조는 WTO 설립협정 제13조(특정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협정 비적용)항으로 변경되면서 도입되었으며, WTO 설립협정 제12조(가입) 조항에 의해 가입한 회원국과 타회원국 사이에 적용된다.

한편 WTO가 1995년 1월1일 발효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GATT 가입협상이 종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WTO 원체약국 지위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은 GATT 가입협상이 아닌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GATT 1947과 GATT 1994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sup>39)</sup> 중국이 GATT 1947의 원체약국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WTO 설립협정 제14조 1항에 의거 1997년 1월1일까지 WTO를

한 자치권을 보유하거나 자치권을 취득한다면, 책임을 지는 체약국의 동 사실 확인선언에 의하여 동 영역은 하나의 체약국으로 간주된다. 1950년 인도네시아가 동 조항에 의거 최초로 GATT에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홍콩(1986)과 마카오(1991)도 독자적인 GATT 회원국이 되어 WTO의 원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대만은 GATT 제33조에 의거 "Taiwan, Penghu, Kinmen, Matzu" 4개 지역을 통털어 독립된 관세지역의 대표정부 자격으로 1990년 GATT에 신규가입 신청을 하였다. 대만은 따라서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의거 독립적인 관세영역으로 WTO 가입을 신청 중이다.

34) 조부권(grandfather rights)이란 GATT 가입시 비록 GATT에 위배되더라도 기존의 국내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체약국들은 'GATT 잠정적용의정서'의 "GATT II부는 기존의 법률과 일치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조부조항(grandfathering)에 의거 GATT 서명일 이전에 유지하고 있는 법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

35) GATT 1994, Paragraph 1(a)

36) Article XVI (Miscellaneous Provisions) 4. Each Member shall ensure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its obligations as provided in the annexed Agreements.

37) GATT 제35의 부적용 조항(Article XXXV : Non-applic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Particular Contracting Parties)이란 상호 불만이 있는 일부 체약국들간에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세양허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동 조항은 신규회원이 가입하는 경우에만 발동가능하며, 기존에 GATT 회원국간에는 발동이 불가능하다.

38) 미의회는 1974년 통상법 402조를 제정 공산국(비시장경제국)이 국민의 자유화를 포함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해한 경우, 최혜국 대우와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당초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미-중 무역협정에 기초하여 1980년 2월 1일 최초로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이래 매년 MFN 부여여부를 심사하여 갱신하여 왔다. 특히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 등으로 양국간에 무역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3년 최혜국대우 연장시 제시한 자유로운 이주보장, 수감자들이 제조한 상품의 대미 수출금지, UN의 인권선언문 준수, 정치 및 종교사범의 공표 등 7가지 전제조건에서 크게 후퇴하여, 1994년 재연장시에는 중국산 총기류 및 탄약의 수입금지와 중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등만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조건없는 최혜국대우를 1년간 연장하였다.

39) WTO 설립협정 제II조 4항

수락하게 되어 WTO의 원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GATT에서의 중국의 가입절차는 새로운 회원국이 GATT 가입시 적용되는 GATT 제33조에 의한 신규 회원국 가입방법을 따르고 있다.

### (2) 개도국 지위부여 문제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GATT 가입 신청시부터 개도국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GSP공여, 세계은행의 대출조건, 다자간섬유협정(MFA), 쌍무무역 협정 등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서 GATT에 가입할 경우, 세계경제 질서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해 신진국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중국은 자국경제가 완전히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개도국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개도국 대우를 받더라도 미국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개도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문상의 개도국 우대조항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sup>40)</sup> 최근 미국은 중국의 GATT 가입 심의회의에서 GATT의 가입조건으로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41)</sup>

### (3) 무역관련제도의 투명성 문제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보장을 위해서는 중국의 무역관련제도가 GATT 회원국들보다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투명성의 대상은 다음의 것들이 제시되었다.<sup>42)</sup>

- 1) 수출 또는 내수용 공산품과 서비스의 생산비용과 가격설정 체제
- 2) 생산비용, 가격, 생산과 관련된 관행(보조금), 대외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정보
- 3) 중국의 주요국가와의 무역규모 및 활동
- 4) 상품수송에 관한 정보
- 5) 의무적 계획, 지도성 계획, 계획목표치, 수출입허가에 대한 정부자료 발간
- 6) 관세율변경, 무역량, 해당 관세율 수준에서 징수된 관세액에 대한 하부 정부기관의 권한과 행정적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명성과 관련된 GATT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WTO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WTO체제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WTO의 중요한 기능으로 채택하여, WTO내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 및 경제체제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시차를 두고 실시되는 정기적인 검토외에 매 2년마다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사항의 이행 및 개혁진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특별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43) 그러나 중국은 정기적인 TPRM의 시행과 가입의정서 약속내용의 이행여부에만 국한시

40) 일부 체약국들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국제수지조항(GATT 12조: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1) 1994년 7월 중국 GATT 작업반 의장이 제출한 중국의 가입의정서 초안에는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에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중국/대만의 GATT 가입과 우리의 영향」,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pp.38-40.

42) 김기홍/조현태, 「중국의 GATT 가입과 우리의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993, pp.33-34.



킬 것을 주장하고, 정기검토를 의정서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4)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 문제

GATT 가입의정서에는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다. 미국,EC,스웨덴 등의 체약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아직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국 상품과의 불공정경쟁의 여지가 많으며,이로인한 중국의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수입국시장의 교란을 우려하여 그 안전장치로 Special Safeguard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44)</sup>

중국의 GATT 가입의정서에 Special Safeguard조항을 명문화 시킬 경우, 중국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은 수입물량의 급증으로 동종 또는 경쟁상품시장에 시장혼란(market disruption)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중국이 적절한 시장조치를 취할때까지 중국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차별적인 수입제한 또는 관세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특별 세이프가드조항은 중국의 상품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동 조항의 수용에 반대입장을 취했으나, 조건부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5) 도쿄라운드 MTN협정 가입문제

중국의 MTN협정 가입문제는 GATT가입을 위한 비공식협의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MTN협정 중 반덤핑 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수입허가절차 협정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 3개 MTN협정은 중국의 경제체제에 기인한 불공정경쟁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은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훼손을 축소시키고 수입허가절차 협정으로 불필요한 수입절차와 수입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관련 국내산업의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복수국간 협정인 정부조달 협정 및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나, 미국 EU 등은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므로 1996년에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고, 중국이 향후 민간항공기 주요 생산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기 협정도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MTN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의정서에 가입시기와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측은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6) 서비스시장 개방문제

미국,EU 등 주요국은 금융,보험등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UR협정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서상에 서비스부문 개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자국이 UR협상 참가국이며 최종의정서 서명국으로서 WTO가입시 서비스 협정상의 규정을 존중할 것이므로, UR협상의 일환으로 양허되는 부분 이외에는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GATT가입 의정서상에 서비스부문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5)</sup>

43) TPRM은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제도에 대한 명료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난 1989년 4월 이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 검토시기는 세계교역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4대 교역국(EU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은 매 2년을 주기로, 5위-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여타 회원국은 매 6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44) Special Safeguard란 GATT 제19조(Article XIX: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에 규정된 무차별적인 Safeguard와는 달리 특정국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성격의 Safeguard를 의미한다. 중앙계획경제국인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의 GATT 가입의정서에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이 명문화 되어있다.

45) 중국은 GATT 체약국이 아닌 상태에서 1986년 Punta del Este 각료회의부터 GATT 미가입국인 알제

## (7) 가격통제 문제

중국의 가격체제는 가격관리방식에 따라 국가결정가격(state price),국가지도가격(state guidance price),시장조절가격(market-regulated price)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6)</sup> 이중 국가결정가격에 있어서 계약국들은 적용범위와 적용품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부문의 시장가격 체제 정립과 이증가격체 폐지 등의 가격통제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당분간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전환보다는 95년까지 일부 생산재와 운임을 제외하고 이증가격제를 단일가격제로 바꾸어 나가는 등, 실현가능한 가격개혁을 우선적으로 단행하여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가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간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sup>47)</sup>

## (8) 중·미 통상마찰 문제

미국과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와 결부한 미국의 대중 최혜국우대 조건부 연장,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지적소유권 보호문제,301조 조사,대만에 대한 F-16전투기 판매 등으로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왔다. 그중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문제는 1994년 5월 인권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통상마찰은, 1992년 10월10일 중국이 「중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중미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sup>48)</sup> 또한 미국과 중국은 1994년 8월29일 포괄적 무역구조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였다.<sup>49)</sup>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미 통상대표부는 1991년 4월26일 88통상법 「Special 301조」에 근거,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문제도 1992년 1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1995년 2월 미 통상대표부는 중국이 그동안 지적재산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전제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이러한 중미간의 무역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

리, 파라과이, 온두라스 등과 함께 UR협상에 참가해 왔으나, 파라과이와 온두라스가 GATT에 가입함으로써 알제리와 중국만이 GATT 계약국이 아닌 상태에서 본 각료회의에 참가하여, 중국정부는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최종협정문'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설립협정'에 서명하였다.

- 46) 국가결정가격은 국가경제 및 국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당국이 지정한 가격으로, 당국의 승인 없이는 조정될 수 없는 가격이며, 국가지도가격은 다소 융통성이 있어 상한가격과 하한가격 사이의 유동성이 보장되어 있어, 기업이 유동성내에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시장조절가격은 가격관련 정책 및 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유로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 47) 1992년 현재 농산물 중 국가결정가격 비율은 17.0%,국가지도가격 비율은 15.0%, 시장조절가격 비율은 68.0%에 있으며, 생산재는 각각 20.0%,15.0%,65.0% 그리고 소비재는 각각 10.0%,10.0%,80.0%로 가격의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그리고 1993년 12월 국내무역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통제,관리하는 물자를 27종에서 철강,목재,시멘트,석유,중유,아연,트럭,케이블,주조품 등 10종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 48) 중미무역협상에서 합의된 중국의 시장개방약속은 다음과 같다. 1)관세인하, 2)쿼터,수입제한,수입허가제도,수입통제 등 비관세조치의 완화, 3)무역정책과 제도의 투명성 확보, 4)수입대체정책의 폐지 및 수입허가증 발급시 기술이전 또는 투자요구 철폐, 5)수입검사제도 개선 등이다.
- 49) 동 협정은 통신,화학,발전,항공,전자,자동차,기계,서비스 등 14개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상법 전문가교환,기술교환 및 경영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박월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9. 중국동향.
- 50)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중 휴대용 전화기,스프츠용품,뉘싯대,목제인형,플라스틱 제품 등 35개 품

었다.<sup>51)</sup> 만약 중미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은 WTO 가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가속화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WTO 가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미국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기업들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1992년 180억달러, 93년 232억달러, 94년에는 300억 달러에 달하여, 가장 주요한 이해당사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GATT 가입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의 2번째 무역흑자국으로 개도국으로 GATT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중·미 쌍무 협정 사항을 위배하여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등을 들어 중국이 아직 GATT 가입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그외에도 중국은 GATT에 위배되는 각국의 대중국 수량규제 조치 및 여타 수입규제 조치들을 철폐할 것을 의정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국내에서 외국기업의 대외무역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약국들은 대외무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대외무역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무역업허가조건 완화 및 철폐, 외환취득 자유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 IV. 중국의 무역장벽과 시장개방

##### 1. 관세

중국은 현재 복합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중국과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인 보통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1월1일부터 실시한 HS분류법에 따라 전체 6,321개의 관세품목 중 2%에 해당하는 1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38.4%에 해당하는 2,4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30%의 관세율을, 28.4%에 해당하는 1,713개 품목에 대해서는 30-60%, 23.4%에 달하는 1,479개 품목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금지품목을 제외한 관세대상품목의 관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은 39.9%, 가중평균관세율은 21.9%로 선진국의 4-5%나 개도국의 13-1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sup>52)</sup> 그리고 중국은 관세 이외에도 관세에 준하는 수입세제로서 소비세<sup>53)</sup>와 증식세(부가가치세)<sup>54)</sup>를 징수함으로써 관세와 같은 수입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목(HS 8단위 기준, 10억 8,000만 달러)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도 즉시 미국의 대중 주요 수출상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의 역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 51) 미국과 중국은 1995년 2월26일 미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중단을 내용으로 한 8개항의 행동계획에 합의 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양국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특별단속하며, 이를 위한 특별단속반 설치운영, 해적생산장비 파괴, 사법적 처벌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52) 박상수,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2. pp.82-83.
- 53) 중국정부는 1993년 12월31일 국무원령 135호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잠행조례」를 제정(1994년 1월1일 실시)하여 일부 소비품에 대해 국내생산, 위탁가공, 또는 수입시 「소비세세목세율(세액)표」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비품의 세율 또는 세액에 따라 최저 3-45%의 소비세율 또는 0.1元-240元の 소비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박상수,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2. p.86.
- 54) 1993년 12월13일 국무원령 134호로 공포(94년 1월1일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증식세잠행조례」 제2조에 따라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증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예외적인 조항을 제외하고 17%를 부과하고 있다. 박상수,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2. p.86.

한편 중국은 GATT 가입추진과 관련하여 1984년부터 1990년까지 18차에 걸쳐 83개 세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그리고 1992년 1월 원재료와 농기계 등 22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을 45%에서 30%로 낮추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12월에는 전체 수입품목의 54%에 달하는 3,371개 품목에 대해 평균 7.3%의 관세를 인하 조치하였고, 1993년 12월31일부터 2,89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8.8%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단순평균관세율이 39.9%에서 36.4%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4월1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전 220-180%에서 150-110%로 인하하였고, 섬유,내구소비재,승용차 등 16개 품목에 대해 1985년 이후 20-80%의 추가관세를 부과해왔던 수입조절세를 1992년 4월1일부터 폐지하는 등의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sup>55)</sup>

그리고 최근 중국이 GATT에 제출한 양허계획서에 의하면 HS 품목분류 모든 품목에 대해 평균관세율을 18.6%로 인하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GATT가 요구하는 개도국의 수준까지 점차 인하하고, 개별 관세율은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수준에 기초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중국의 관세율은 일반 GATT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평균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sup>56)</sup> 품목별로 세율격차가 심한 관세구조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비관세 장벽

### (1) 수출입상품 분류관리제도

중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리제도는 모든 수출입품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제1,2,3류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무역회사가 수출입을 맡게 한다. 제1류와 제2류 품목은 국가의 계획관리 대상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제1류에 해당하는 수출입상품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은 지령성 계획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어 반드시 계획에 따라 수출입을 하여야 하고, 수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지정한 무역전업회사 본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제2류의 수출입상품은 강제성은 띠지 않으나 경제조성을 위한 품목으로 지도성 계획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의 무역업체들이 수입할 수 있다. 제3류의 수출입상품은 시장조절에 의하여 정부의 간섭없이 완전히 시장기능에 의해 수입권을 가진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을 할 수 있다. 제3류 품목이더라도 때로는 국가계획상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지령성 수입계획은 총수입액의 1/5까지 감소하여 곡물,화학비료,목재,면화,철광석 등의 14개 수입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축소시킬 계획이다.

<표 5>

중국의 수출입 상품 분류 기준

55) 「중국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pp.583-584.

56) GATT 회원국 중 중앙계획경제국이었던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체코공화국(1992) 6.0%, 헝가리(1993) 11.0%, 폴란드(1993) 11.0%, 루마니아(1992) 13.0%. Tseng, Khor, Kochhar, Mihaljek and Burton(1994), 「Economic Reform in China」, IMF Occasional Paper 114, 1994, p.7.

	수 출 상 품	수 입 상 품
제1류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작은 생필품이나 원료로서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풍부하고 해외시장의 독점력 확보가 가능한 제품	국내수요가 큰 공업원료,농업용 물자 및 생활필수품 (14개 품목)
제2류	국제시장에서 수량이 제한되거나 경쟁이 치열한 품목,쿼타품목,생산에서 국내자원이 부족한 품목,종합적 수급균형을 요하는 품목	국내공급 부족 상품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공급이 제한적이거나,가격변동이 큰 상품,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이가 크고 수입량이 많은 상품(6개 품목)
제3류	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상품	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상품

자료 : 오용석(1993),「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p.38.

(2) 수입쿼타관리제도

중국정부는 기계 및 전자제품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주관하에 기전상품의 수입에 대해 할당 및 비할당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기전상품수입에 관한 잠정조치(1993.10.7)」<sup>57)</sup>와, 기전상품을 제외한 일반상품의 수입할당관리를 위한 「일반상품 수입할당관리 잠정조치(1993.12.29)」를 제정하여 19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sup>58)</sup> 두가지 법규 모두 자국의 산업보호 및 외환수지 개선을 위한 할당관리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수입허가증관리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와 무분별한 상품수입에 따른 외화지출을 억제하고,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한 무역수지균형을 위하여 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허가증제도는 1984년 1월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허가제도 임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진구화물허가제도잠행조례)」 및 그 실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sup>59)</sup> 따라서 수입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출입경영권을 획득한 기업들만이 신청 가능하다.<sup>60)</sup> 이와같이 중국기업만이 무역업을 행하고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시장의 접근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증관리제도가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복잡한 허가절차와 그 자의적인 운용 때문이다. 즉, 국내 대체품의 보호 필요성이나 국가계획 목표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수입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낭비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재의 수입을 금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금액면에서 총수입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입제한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GATT 재가입의 실현을 위하여 1993년 12월31일부터 1996년 12월31일까지 46개 품목을

57) 기계·전자제품은 중국의 최대 수입품목으로 1994년 1월1일부터 발효된 「기전상품수입에 관한 잠정조치」에 따라 쿼타 및 비쿼타품목으로 나뉘어 수입이 관리되는데, 쿼타 대상품목은 '할당증명'을 통해,비쿼타 대상품목은 '입찰 및 자동등기제도'를 통해 수입이 관리되고 있다.박상수(1994),「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pp.73-78.

58)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3. pp.97-99.

59)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44-45.

60)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공고에 의하면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과거 53개 품목이었으나 1992년 6월 16개 품목을 취소하여 현재 3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수입허가 제도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중국의 1993-1996년 수입허가중 폐지 대상 품목

폐지시점	품목수	주요 품목
1993.12.31	12	과일, 흑백 브라운관, 민영항공기, 커피, 강재, 폐강, 폐선, 강피 코발트 등
1994.12.31	23	냉장고, 세탁기, 맥주, 포도주, 식유, 목재, 펄프, 담배, 담배 필터, 합판, 컴퓨터, 인쇄설비, 화학섬유, 의류, 정제식물 기름, ABS 수지, 합성수지, X선 기기, 5000와트 이상 냉압축기, 화공품 등
1995.12.31	9	필름, 복사기, 집적회로, 자동차 새시, 자동차 클러치 등
1996.12.31	2	농약, 탄산음료

자료 : 오용석(1993),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p.46.

#### (4) 수출입상품검사제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진출구상품검험법실행조례(1992.10.7 국무원 비준, 10.23 국가상검국 공포)」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sup>61)</sup> 현재 중국은 17류 303개 품목의 수입상품과 17류 589개 상품의 수출상품에 대해 상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검사 대상 품목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입검사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국산품보다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고, 수입검사제도 자체가 국내산업의 보호와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상검국은 1990년 5월1일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 TV 수상기 등 9개 기계·전자제품에 대해 수입상품품질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5) 외환관리제도

중국은 2중환율제도, 외환보유제도, 외환할당제도 등의 외환관리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12월29일 중국인민은행은 「외환관리체제의 진일보개혁에 관한 중국인민은행 공고」를 통해 1994년 1월1일부터 현행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미달러당 인민폐의 변동환율을 8.7원으로 첫 공시하였다.<sup>62)</sup>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공식환율과 외환조절센터의 시장환율로 이원화 되어있던 기존의 제도는 시장환율로 일원화 되었다. 이와같은 조치는 중국의 무역체제를 국제관행에 보다 접근시킴으로써 GATT 가입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중국기업의 국제화, 외국자본의 투자환경 개선 및 元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경, 천진, 항주, 심천, 하문, 성도 등 6개 도시의 외환시세를 위성통신망을 통해 상해에 위치한 '전국외화교역중심'과 연계시키는 전국통일의 은행간 외화교역시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중 일정비율을 중앙에 상납·유보하던 상납제와 유보제가 철폐되었고, 수입시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던 외환사용허가도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내국기업,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외화수입은 전액 공식환율에 따라 지정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수입 등에 필요한 외화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은행에서 매입해야 한다. 이는 외화를 국가의 금융기관내에서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민폐의 완전한 태환성 회복과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61)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122-130.

62) 기존의 고정환율이 약 5.8元이었음에 비추어 이번 조치로 元화의 실질가치가 33.3% 평가절하된 셈이다.

다.<sup>63)</sup>

(6) 무역제도 개선

중국의 무역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령의 공표와 시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입관리제도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부서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행정수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되던 무역관리체제를 국제화와 GATT 가입을 위한 준비조치의 일환으로 「대외무역법(1994.5.12 공포, 7.1 시행)」을 제정하였다.<sup>64)</sup> 이번 대외무역법은 GATT가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출입 상품과 기술, 국제 서비스교역, 무역질서, 무역촉진방안, 법률책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의 제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에 있어서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 결 론

중국경제는 일보 진전된 시장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은 나름대로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은 경제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면서 대외지향적 또는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취해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및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서방의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면서 국내 국영기업체제를 서방 기업경영방식에 접근시켜 가고 있다. 비록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성상의 경직성과 소유관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나, 일련의 개혁, 개방 조치들은 결국 시장경제로의 진일보 된 적용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1992년의 12.8%, 1993년의 13.4%, 1994년에는 11.8%로 연속 3년간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2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사회불안 요인으로 되고 있다.<sup>65)</sup> 따라서 제8기 전인대 3차대회(95.3.5-20)에서는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 억제와 농업부문 개혁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따라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고정자산투자의 억제, 통화량 축소 및 소비심리 억제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8-9%로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을 15%까지 낮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망위적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일부 국영기업의 개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sup>66)</sup>

한편 중국은 GATT가입 협상과 관련하여 시장개방 확대 및 무역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63) 박월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 중국동향.

64)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6. pp.126-130.

65)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90	91	92	93	94
GDP 실질성장률	5.2	7.7	12.8	13.4	11.8
소매물가상승률	1.3	5.1	6.4	13.0	21.7
(35대 도시)	3.6	8.0	10.9	17.4	24.2

자료 :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2. p.37.

66) 鄧小平(91세) 死後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전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혁, 개방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며, 대외경제정책에서는 수입억제 및 수출촉진의 가속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경제의 타격을 우려하여 대외협상에서는 추가적인 양보를 최소화하려는 강경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월라, 「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3월호, pp.57-58.

로 추진하였으며, 관세인하, HS제도의 도입, 수입조절세 폐지, 수입허가제도의 완화 등의 구체적인 시장개방 및 무역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1995년에 GATT를 승계하여 출범하는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기 위해 1994년 중으로 GATT 가입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은 2중환율구조 하에서는 GATT의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1994년 1월 단일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으며, 3월에는 1997년까지 수입쿼타제를 폐지하겠다고 공표하는 등의 GATT 재가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여왔다. 이렇게 중국은 GATT 가입에 대비하여 무역제도 개선 및 시장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수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은 GATT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등 체약국 들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WTO 발효이전에 중국의 GATT 가입협상은 종결되지 못하여 중국은 자동적으로 WTO의 원체약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GATT 회원국들은 WTO 내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중국의 WTO 가입자격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각 회원들과 쌍무협상을 벌여 가입 지지를 받아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작업반 실사와 쌍무협상의 시한은 WTO 발효후 6개월 이내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중미 지적재산권 협상에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은 1995년 2월26일 미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중단을 내용으로 한 8개항의 행동계획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미국으로부터 WTO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선진국에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무역규정 대신 보다 완화된 무역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도국의 지위로 WTO에 가입하겠다는 요구도 검토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될 협상을 통하여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이어 보험, 부가가치 통관, 농산물 등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 중국시장을 더 개방시킨 다음,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WTO 창립회원국이 되는 것을 공식 지지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WTO 가입은 1995년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sup>67)</sup>

중국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할 경우에 중국은 WTO가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MFN 대우 및 GSP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sup>67)</sup> 대외적으로는 세계3대 국제기구(IMF, World Bank, WTO) 회원국이 되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개혁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여 기존의 개혁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쌍무협상에서 다자간협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각국의 경제적 압력을 회피하는 한편, WTO의 분쟁해결절차 이용 등의 WTO 회원국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이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비관세장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WTO의 가입으로 중국이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는 경우에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은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68)</sup> 이러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는 대중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어 대중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반면 제3국에서는 중국과의

67) 현재 중국은 12개 EC 회원국을 포함한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21개국으로부터 GSP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부터는 GSP를 받지 못하고 있다.

68) 미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중 47%가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공산품은 62%가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비중(1990) (단위 : %)

	미 국	E C	일 본
전품목	47	30	22
공산품	62	48	28

\*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중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비중(%)  
자료 : Lardy(1994), 「China in the World Economy」, pp.43.



수출경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홍, 조현태, 「중국의 GATT 가입과 우리의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71호, 1993.4.
- 김효율, "중국의 무역제도와 GATT 가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통권 51호, 1991.
-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4-03, 1994.10.
- 안종석,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실태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01, 1993.6.
- 안종석, 「미·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3-09, 1993.12.
- 양평섭, 안종석,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 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2-03, 1992.12.
-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36, 1993.12.
- 이보근,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연구보고 93-02, 1993.12.
- 이학규 외, 「중국의 주요 산업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86호, 1989.12.
- 이학규, 조영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48호, 1992.4.
- 정영목,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16, 1993.5.
- 조현태, "중국의 시장개방과 GATT 가입협상의 진전현황", 제간 북방지역경제, 산업연구원, 1992.9.
- 조현태 외,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23호, 1994.8.
-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 북방경제」, 각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정책연구 94-05, 1994.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북방동향」, 각호.
- , 「중국편람」, 94.10.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지역센터, 「CNAS 북방경제」, 각호.
-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각호.
-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1994.
- 대한무역진흥공사, 「월간 북방통상정보」, 각호.
-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대만의 GATT 가입과 우리에게 의 영향」, 무공자료 94-63, 1994.12.
- 산업연구원, 「북방지역경제」, 각호.
-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각년호.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보」, 각년호.
-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월간 북방동향」, 각호.
- , 「중소연구」, 각권.
- Cai, Wenguo. "China's GATT Membership: Selected Legal and Political Issues." Journal

- of World Trade 26, no.1(February), pp.35-61, 1992.
- Chiu,Thomas C.W. "China and GATT: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for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Dec. 1992.
- Feng,Yu Shu, "China's Membership of GATT:A Practical Proposal", Journal of World Trade, vol.22, no.6, Dec. 1988.
- GATT, C/M Series.  
 ----, L/6270 L Series.  
 ----, BISD(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 Various Issues.  
 ----, L/6191호
- GATT, '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 "China's Foreign Trade Regime", Spec(88)13/ADD.4/REV.I, p.16.
- Lardy,Nicholas R. 'China in the World Economy', IIE, Washington,D.C. 1994.
- Li,Chung Chou, "Resumption of China's GATT Membership",Journal of World Trade Law, Aug. 1987.
- Mckenzie,Paul D. "China's Application to the GATT:State Trading and the Problem of Market Access", Journal of World Trade, Oct. 1990.
- Tseng,Wanda,Hoe Ee Khor,Kalpana Kochhar,Dubravko Mihaljek, and David Burton. 'Economic Reform in China A New Ph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casional Paper 114, Washington DC. 1994.
- Wang,Guiguo. "China's return to GATT,Legal and Economic Implications",Journal of World Trade, June, 1994.
- Ya,Qin. "China and GATT : Accession Instead of Resumption." Journal of World Trade 27, no.2(April), pp.77-98, 1993.
- Yu,Guang Hua, "China's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28 No.6, December 1994, pp.99-120.